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6. 12. .
기획행정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11월 13일
충 청 북 도 지 사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06.12.1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1. 제안이유

가. 음반·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신고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음.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각기 시행되고

다. 아울러 위법에 의해 음반·비디오·게임물 등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20,000원
- 나.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다.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20,000원
- 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 마.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 20,000원
- 바.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 10,000원

III. 검토보고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가. 음반 및 음악영상물·비디오·게임물의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및 신고수수료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음.

나. 동법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으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3개 법률 제정 2006.4.28, 3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10.27

다.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수수료는 20,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 원으로 정하고 있음.

라. 동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금액이나 업무의 변동은 없고, 근거 법령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견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효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마목에 (10) 내지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 액
마. 문화공보 관계		
(10)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신고	1건	20,000
(1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2)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3)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1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원)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단위: 원)		
구 分	기준	요율	구 分	기준	요율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시설 확인 등 가.~라. (생 략) 마. 문화공보 관계 (1)~(9) (생 략) <u>< 신 설 ></u>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시설 확인 등 가.~라. (현행과 같음) 마. (1)~(9) (현행과 같음) <u>(10)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 신고</u> <u>(11)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 변경신고</u> <u>(12)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u> <u>신고</u> <u>(13)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u> <u>변경신고</u> <u>(14)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u> <u>영상물 배급업 신고</u> <u>(1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 음악영상물 배급업</u> <u>변경신고</u>		
				<u>1건</u>	<u>20,000</u>
				<u>1건</u>	<u>10,000</u>
				<u>1건</u>	<u>20,000</u>
				<u>1건</u>	<u>10,000</u>
				<u>1건</u>	<u>20,000</u>
				<u>1건</u>	<u>10,000</u>
				<u>1건</u>	<u>20,000</u>
				<u>1건</u>	<u>10,000</u>

관계법령 발췌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등 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등 제작업 및 음반등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신고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 제작업 또는 음반등 배급업의 변경신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수수료(제12조관련)

내 용	금 액
음반 등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2만원
음반 등 제작업·배급업의 변경신고	1만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신고)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제90조 (수수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개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

악 영상물배급업의 신고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징수 구분) ①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공유수면 매립 면허수수료는 별표 1, 기타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